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 산업건설위원회 -

- | | |
|----------|--------------|
| 1. 문화관광과 | 8. 농업축산과 |
| 2. 자연환경과 | 9. 농업개발과 |
| 3. 산림녹지과 | 10.기술보급과 |
| 4. 건 설 과 | 11.환경관리사업소 |
| 5. 교 통 과 | 12.수도사업소 |
| 6. 도시개발과 | 13.청풍관광개발사업소 |
| 7. 건 축 과 | |

제 천 시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조치결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5. 1. 31. 現在

실과소별 추진상황	계	공 통 사 항	문 화 관 광과	자 연 환 경과	산 림 녹 지과	건 설과	교 통과	도 시 개 발과	건 축과	농 업 축 산과	농 업 개 발과	기 술 보 급과	환 경 관 리소	수 도 사 업소	청 풍 관 개 발 사 업 소
소 계	32	-	10	1	4	3	1	1	-	-	-	2	1	1	8
완 료	8	-	1	-	2	1	-	-	-	-	-	1	1	-	2
추진중	24	-	9	1	2	2	1	1	-	-	-	1	-	1	6
시 기 미도래	-	-	-	-	-	-	-	-	-	-	-	-	-	-	-
조 치 불 가	-	-	-	-	-	-	-	-	-	-	-	-	-	-	-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예산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편성 부적정 • 제천의병도서관 건립예산 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편성과목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며,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시 동일과목으로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신청 때에는 계속사업은 동일 예산과목으로 편성토록 하여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완 결
명시이월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사업 추진 미흡 •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 • 한수수물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조성공사 및 청풍폐교 활용소득원개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명시이월사업의 경우 사업추진이 미흡하여 사고이월로 재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기 바람, ○ 한수수물전시관 및 야외공연장 시설조성공사 및 청풍폐교 활용 소득원개발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정보센터 건립사업은 사고이월이 불가피하였는바 2005년 4월중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5년도 상반기 중 사업을 재선정하여 시행하고, 2003·2004년도 확보예산은 전액 반납후 재교부 활용 • 기획감사실과 협의, 읍면동 신청사업 확정에 따라 소관부서 지정 시행 	추진중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명시이월사업 추진	○ 명시이월사업 불승인예산 집행 부적정 • 제천시캐릭터 디자인 개발 용역(4천만원)	○ 타당성 결여 등으로 명시이월 불승인된 사업에 대하여 사고 이월 처리하여 집행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향후 동일 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관계부서에 대 하여 페널티 적용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	○ 향후 예산에 대한 적절한 집행과 절차 이행 으로 이와 같은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음.	완 결
문화재 관리	○ 문화재 관리 미흡	○ 명오리고가에 대해서는 비가 새지 않도록 전면적인 개보 수를 실시하기 바람. ○ 박약재에 대해서는 비가 새 지 않도록 개보수를 실시하 기 바람 주위환경을 정비 토록 조치하기 바람.	○ 2005. 도비보조 사업비 140백만원 확보 •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 2005. 3월중 • 공사 준공 : 2005. 10월중 ○ 2005. 도비보조 사업비 60백만원 확보 • 공사설계 완료 및 착공 : 2005. 3월중 • 공사 준공 : 2005. 7월중	추진중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관광안내판관리	○ 관광안내판 보완요망	○ 덕주산성 동문에 대하여 고증을 통하여 관광안내판의 내용을 보완하고 역사성을 관광객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덕주산성 동문의 문화재안내판에 대하여 여름철 관광성수기 이전에 보완·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음. • 문안 재 작성, 충북도 승인 : 2005. 5월중 • 안내판 제작, 정비완료 : 2005. 6월중	추진중
관광객 통계관리	○ 주요관광지 관광객 통계 측정 요망	○ 주요관광지에 대하여 방문 관광객을 정확하게 측정하여 향후 관광정책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2005년도 관광객 이동현황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해당 읍면동에 관광객통계 조사 요령·지침교육 및 정밀한 조사 진행으로 체계적인 측정 자료를 얻을 수 있도록 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음	추진중
문화재 관리	○ 두학석조여래 입상 주변정비 요망	○ 두학 석조여래입상 주변환경은 지방유형문화재에 어울리지 않게 정비되지 않았으므로 문화재에 걸 맞는 울타리 설치 및 기반조성 등의 주변 정비사업을 하여주기 바람.	○ 주변환경 정비사업은 두학사지 정비사업과 복합적으로 추진될 사항이므로 두학사지 주변토지매입이 선행되어야 함 ○ 두학 석조여래입상 주변토지매입비 및 정비사업비는 2006년 도비보조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으로 예산신청 후, 추진토록 하겠음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의림지 여수토 개량사업 및 주변시설정비 사업	○안전휰스 설치 요망	○양수장 취수보는 만수시 1.6m의 깊이가 되어 주변 약수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바 취 수보 주변에 안전휰스를 설치 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동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검토 후, 반영 추진하겠음.	추진중
	○주변정비에 따른 대책 강구 요망	○현재 의림지주변에는 가건물 로써 포장마차 같은 매장이 불법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고, 의림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정비를 하는 시점에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가건물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업기반공사 및 해당 실과와 협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람	○ 의림지 주변 불법건축물 및 영업행위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위하여 농업기반공사 및 해당 실과(건축과, 도시개발과, 보건소)와 합동으로 전수조사 및 처리 방안을 수립, 시행하여 역사문화 유적지로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추진 • 전수 조사 및 계획수립 : 2005. 3월말 • 홍보 및 자체 철거유도 : 2005. 9월말 • 대집행 등 검토시행 : 2005. 12월말	추진중
	○자연친화적인 조경요망	○원격제어·감시시스템 구조물 주변지역은 자연훼손이 되어 미관상 좋지 않으므로 자연친화 적인 조경을 하여 주기 바람	○ 설계변경 검토 후, 반영 추진하겠음.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문화관광과】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수물전시관 관리	○ 수물 전시관 관리	○ 수물전시관은 2002년부터 2003년까지 10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건립하였으나 전시물의 내용이 빈약하여 내방객이 적은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수물전시관의 전시물을 비롯한 내용을 보강하여 많은 내방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향후 수물전시관의 적극적인 활용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관리부서인 청풍관광개발사업소와 협의, 전시물 보강방안을 모색하여 많은 관람객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음.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자연환경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하천관리	<p>○ 덕산면 성천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산면 성천은 도기리,선고리,성내리,신현리,수산리에 걸친 도로변에 인접한 하천으로 하천 전역에 청태가 파랗게 끼어있음. - 따라서 이곳을 지나는 많은 외지 관광객에게 청천 제천이라는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음. 	<p>○ 오염원 조사를 통하여 오염원을 저감 시킬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조치하기 바람.</p>	<p>성천은 인근주민 생활하수 등 비점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되며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환경관리사업소에서 계획 중인 사업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산면 하수처리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덕산면 신현-성내-선고(연계처리) · 사업량 : 하수처리장 500톤/일 및 관로시설 · 사업기간 : 2006년~2010년 · 사업비 : 15,513백만원 ○ 도기리 마을하수처리장 건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덕산면 도기리 · 사업량 : 마을처리장 50톤/일 및 관로시설 · 사업기간 : 2006년~2010년 · 사업비 : 1,357백만원 <p>※ 2006년 사업이 확정되도록 국비에산확보에 노력하겠음</p>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산림녹지과】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조치요구내용	조치계획(결과)	비고
가로수, 조경수 식재 및 보식현황	<p>○가로수, 조경수 식재 및 보식 미흡</p> <p>- 송학면 소나무거리 조성사업은 소나무를 식재하여 주민휴식 장소 및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p> <p>- 덕산면의 경우 26,786천원의 예산으로 70본의 소나무를 식재하였으나 송학면은 36,893천원의 예산으로 37본의 소나무를 식재하였음.</p> <p>- 송학면의 경우 기존의 도로에 1m 폭의 화단을 만들어 도로를 좁게 만들었으며, 가로수에 어울리지 않는 조경소나무를 식재하여 과도한 예산을 투자하였음.</p>	<p>○향후 위와 같은 사업을 시행할시 수종뿐만 아니라 식재 지역의 토질, 관리방안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예산의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람.</p>	<p>○ 덕산면에서는 식재할 소나무를 기증 받아 굴취, 이식하여 수목대의 절약으로 식재본수가 증가되었으나</p> <p>○ 송학면은 식재할 지역이 저지대로 습해우려 등이 있는 지역이나 송학면 주민들이 화단을 조성하고 식재할 것을 요구하여 마사토로 성토하고 화단을 조성하여 화단조성사업비 12,000천원이 투입되어 소나무식재본수가 줄어들었음</p> <p>○ 향후에는 식재수종 및 식재지역의 토질과 사후관리방안,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등을 철저히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기의 사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완료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산림녹지과】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조치요구내용	조치계획(결과)	비고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	○ 임도시설 및 구조개량사업 미흡(백운면 덕동리 산120-1) - 25구간 돌망태 석축 2단계 쌓기 미흡 · 돌이 철망보다 작음. - 41구간 돌망태 석축 3단계 쌓기 마무리 미흡 - 물섬터 석축시공방법 부적절 · 장마철, 집중호우시 붕괴 위험 - 인도급커브 시공 부적절 · 커브 운행시 도로를 벗어남 - 옹벽시공미흡 · 옹벽 밑부분이 임도보다 위에 시공됨.	○ 돌망태안의 돌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재시공 바람. ○ 돌망태 끝부분의 마무리 재시공 바람. ○ 장마철, 집중호우시 붕괴되지 않도록 재시공 바람. ○ 커브 운행시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보수공사 하기 바람. ○ 옹벽 밑부분에 보강공사를 하기 바람.	○ 규격에 맞는 돌로 재시공 완료하였음 ○ 돌망태 끝부분 재시공 완료하였음 ○ 재시공 진행중(사업이월) ○ 설계대로 시공되었으나 보완공사가 요구되는바 2005년 보수공사실행계획 ○ 보강공사 완료하였음	완료 완료 추진중 추진중 완료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산림녹지과】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조치요구내용	조치계획(결과)	비고
명시이월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시이월사업(산림형질변경지 복구 대집행) 추진미흡 - 명시이월사업은 세출예산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 연도 내에 특정사업에 대한 지출을 못할 것이 예측되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임. -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대집행 사업(금성면 양화리, 수산면 고명리)의 경우 명시이월사업임에도 조속히 추진하지 못하고 '04. 11월 중순에 착공함. - '04. 12. 31일 현재 금성면 양화리의 사업은 '04. 12. 18일 완료하였으나 수산면 고명리의 사업은 사고이월시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면 고명리 산림형질변경지 복구 대집행사업은 조속한 시일 내 준공토록 하고 ○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완료를 하지 못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익년도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해지와 동시 공사를 착수하여 조속히 준공토록 하겠으며 ○ 향후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고이월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산림녹지과】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조치요구내용	조치계획(결과)	비고
마을특화수종 심기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 관리미흡 -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은 농촌마을을 새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2003년도 9개마을 146,918천원, 2004년도 6개마을 108,470천원의 예산을 투자 하여 시행하였으나 - 한수면, 백운면 일부지역의 경우 나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도로변에 식재하였으며, 신백두학동의 경우 소득증대와 거리가 먼 장미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하였음. - 마을특화수종은 마을에서 관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마을 주민이 관리하기 힘든 지역에 식재한 곳도 있었으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잡목이 특화 수목을 뒤덮는 경우도 있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기 시행된 지역에 대해서는 특화수종을 체 계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관리카드작성, 인센 티브부여 등)을 구축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3, 2004년 사업에 대해 특화수종 관리대장(특화수종심기사업 선정배경, 식재현황, 필지별 내역, 사후관리 점검 및 조치사항)을 해당 읍면동에 비치 작성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 도록 조치하였으며 ○ 인센티브 부여방안은 해당 마을에서 식재전 준비사항부터 식재후 사후 관리까지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 하는 마을에 대해 사업 집행잔액으로 식재수종을 추가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으며 ○ 마을특화수종심기사업의 성과를 높 이기 위하여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완료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건 설 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노점상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상 관리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점상 단속은 2003년도 62회, 765건, 2004년도 92회 1,145건으로서 단속회수 대비 30% 늘었으나 - 중앙시장 복개천 부근의 일부 상인들은 물건을 인도위에 쌓아놓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대다수의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인들이 물건을 인도위에 쌓아놓고 상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한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하여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점상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으며, 특히, 중앙시장과 복개천 부근에 1일 2회이상 순회로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불법 노점상 행위를 중점단속하여 도로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음.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건 설 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 치 계 획 (결과)	비 고
하수암거공사	<p>○ 하수암거공사 미흡</p> <p>- 한수면 송계리3리 정주권개발 사업 하수암거 공사의 경우 공사시 주택앞에 우수처리를 위하여 스틸그래팅이 설치되어 주민의 사고 방지나 안전을 기하여야 하나 설치하지 않음.</p>	<p>○ 한수면 송계리3리 정주권개발 사업 하수암거 공사장의 주택앞에 스틸그래팅을 설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바람.</p>	<p>○ 해빙과 동시 사업완료계획임.</p>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건 설 과】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 고
교량설치	○ 교량설치	<p>○ 교량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장마,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발생되고 피해 금액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관내 시설물 안전관리 점검결과 C급 교량이 19개소, D급 교량이 3개소로 제출하였는 바, 위 시설이 노후가 되어 교량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재가설을 할시에는 평균 유속이나 강우량에 의하여 다리의 높이나 폭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장마철, 집중호우시의 최대 유량을 측정하여 설계에 반영, 설치하여 주기 바람. 	<p>○ 교량 설계시 강우에 따른 설계빈도(재현기간)를 50~100년을 기준으로 설계하였으나, 기상의 이변현상이 발생되어 집중호우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교량가설시 설계 빈도를 80~100년 까지 충분히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음.</p>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 건 설 과 】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매고개 농로 포장 공사	매고개농로포장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명칭 승격 필요 • 매고개 농로포장공사를 3년에 걸쳐 600m을 포장한 사업으로 수해 농경지가 많고 도로확포장이 완료되면 통행자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으로 현농로를 법정 도로(리도)로 승격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으로 법정도로인 리도로 승격시켜 나머지 구간에 대한 포장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후산리 ~ 사오리 까지 800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도로등급인 농로 301호선은 1996. 10. 10일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이 수립(변경)이 완료된 사항으로 도로등급의 승격은 어렵고, ○ 도로의 확·포장은 사업비의 부족으로 조기 집행은 어려운 실정이며, 추후 중장기 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임. 	“완결”

2004. 행정사무감사 주차타워 지적사항 조치계획

[교 통 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비고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타워 설치</p> <p style="text-align: center;">《주차타워증축공사》</p> <p>□ 사업개요</p> <p>○ 규모: 2층3단(146면) -기건축:1층2단(99면) -증 축:2층3단(47면)</p> <p>○사업비: 500백만원</p> <p>○공사기간: 05.3월-6월</p>	<p>주차타워시설 부 적 절</p>	<p>1. 주차타워 증축시 시야확보 어려운 차량회전지역 및 출구 부분에 대하여 반사경 설치하여 시야확보 토록 조치</p> <p>2. 화장실 및 관리실의 문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p> <p>3. 타워내 배수가 잘 되도록 조치</p> <p>4. 출입구 간격을 넓혀주기 바람</p> <p>5. 관리실 센서를 사람이 근무하는 곳에 설치하기 바람</p>	<p>1. 반사경 설치</p> <p>○ 주차타워내 진,출입차량 안전을 고려하여 2층 진입로 반사경 설치(1개소) ※ 타워 교통량을 감안하여 설치장소 선정</p> <p>○ 출구 부분은 진출입로 확장으로 시야 확보</p> <p>2. 차량 입구 확장으로 관리실 문 개방시 진입 차량 운전애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 예정</p> <p>3. 1층 대명주차장쪽 측구 배수로 설치 및 3층 지붕층 증축시 최대한 배수가 용이하도록 조치 예정</p> <p>4. 출입구 간격을 확장(7.2m - 9m)하여 진,출입차량 안전사고 방지</p> <p>5. 현 관리사무소내에 있는 관제컴퓨터를 요금 정산소를 확장 이전설치하여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음</p>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기술보급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요구내용	조치계획(결과)	비고
간이집하장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이사업장설치사업 사업자선정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운 방학리 민원기씨가설치한 집하장 설치하는 사업비 47,000천원(도비9,400,시비18,800,자담9,400)으로 2004년도에 완료할 수 있었음. -이 지역은 과원을 조성중인 상태이나 아직 묘목이 식재되지 않은상태로서 집하장을 활용할 때까지는 2년정도가 소요됨에도 사업자로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농림사업에 대하여대상자를 선정할시 주변환경 및 여건등을 충분히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추진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사업대상자 선정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유사사태가 없도록 하겠으며 -주변에 과수원조성및경영상태와 즉시 활용여부등 현지확인.점검을 철저히 하여 대상자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음 	<p style="text-align: center;">“완결”</p> <p>(포기서를징구하고 다른농가로 사업을확정완료)</p>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기술보급과]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요구내용	조치계획(결과)	비고
지역특화 작목야생화사업	○지역특화 작목인 야생화 단지안내 및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	○지역특화작목 야생화 재배 단지 홍보를 위한 안내판 설치로 야생화 판로 및 수출작목 육성을 위해 많은 지도 바람.	○ 야생화 홍보 및 안내 간판제작을 위하여 제1회 추경예산 상정 - 3,000,000원 × 1식 = 3,000천원 - 금년내 홍보용 안내판설치(송학면) ○ 야생화 판로 및 수출작목 육성으로 야생화 기반사업 확대와 종목개발 사업입식으로 제천 관광지역 전시 및 홍보 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사업으로 적극 개발하겠음.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환경관리사업소]

소관부서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요구사항	조치결과	비고
환경관리사업소	송학하수종말처리장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학하수종말처리장 조경공사 설계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학하수종말처리장 당초 설계시 조경공사에 대하여 당초 상록 교목 및 관목으로 설계하였으나 '04. 1. 20. 꽃나무위주로 수종을 변경하여 45,195천원의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 '04. 9. 21. 조경수량의 과다로 관목을 2,312주에서 1,801주로 조정하였으며, 상록수가 많아 꽃종류의 수종으로 일부 변경하여 15,565천원을 감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철저한 조경설계를 통하여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후 조경설계에 철저를 기하여 동일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담당자교육을 충실히 하였음. 	완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수도사업소]

감사대상	지 적 사 항	조 치 요 구 내 용	조치계획 (결 과)	비 고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용료부과징수관리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 하소주공1차아파트의 경우 아파트 단지와 상가의 급수라인이 하나로 되어 있음에도 이를 확인치 않고 상수도사용료를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이중부과하여 민원을 야기 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과 징수한 상수도사용료에 대해서는 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하여 조속히 해결을 하기 바람 ○ 아파트단지와 상가에 급수라인을 분리하여 시공하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조치 완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불일 : 2004. 12. 23 - 환불액 : 3,888,820원 ○ 급수라인 분리시공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 기 : 2005년 4월 - 사업비 : 18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 결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지적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KBS촬영장 세트 관리	<p>○KBS촬영장 세트관리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BS촬영장내 세트중 배의 파손이 심하여 세트로서의 구실을 못할 뿐만 아니라 내방객에게 관광지로서의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음에도 관련업체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못함 	<p>○관련업체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 폐기처분하고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바람</p>	<p>○ 조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기간 : 2004. 12. 7 ~ 2004. 12. 12(6일간) - 철거내용 : 폐선3척 - 철거업체 : 천안소재(주)그린환경 - 철거방법 : KBS 아트비전에서 폐기물 처리업체와 계약후 철거완료 - 소요금액 : 27,500천원 	"완결"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전통문화체험장, 농특산물판매장 관리미흡	○ 전통문화체험장.농특산물 판매장 관리미흡 - 전통문화체험장.농특산물 판매장을 2002년도 준공시 625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2004년도 하자보수를 하였음 - 금년도에 2차례에 걸쳐 입찰공고를 내었으나 응찰자가 없는 실정임	○전통문화체험장. 농특산물 판매장에 대한 활용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 바람	○ 사용수익허가자 모집 결정 <문제점> - 대부료 예정가격과다 • 농.특산물 판매장 ▪ 평가액:152,480,454원 ▪ 대부료:7,624,010원 • 전통문화체험장 ▪ 평가액:176,754,380원 ▪ 대부료:8,837,700원 - 영업채산성 불투명 <대책> - 대부료 하한조정 (최고50%) ▪ 농.특산물판매장 : 3,812,000원 ▪ 전통문화체험장 : 4,418,850원 - 전통문화체험장 동별분리 수익허가 추진 - 계약방법 전환 수익계약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①항제14조 지방재정법 제100조의5규정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p>○시유재산대부, 계약서 작성 (매점,기와집)</p>	<p>○시유재산대부대부약서 (매점,기와집)작성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유행정대부계약서는 갑과 을이 지켜야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위하여 오탈자등이 없이 작성 되어야 함에도 - 대부료의 누락,오자등을 세밀히 살펴보지 않고 작성. 계약함 	<p>○시유행정대부계약서를 대부료 기입,오자등을 정정하여 재계약하기 바람</p>	<p>○ 시유행정재산대부계약서 재작성 교부:2005. 2. 28 (붙임)하였고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p>	<p>“완 결”</p>

2004.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소규모농촌 휴양지 사용허가서	○소규모농촌휴양지(상천,역수)사용허가서 작성 및 이행 미흡 - 시유행정재산유상허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오자를 살펴보지 않고 작성하였으며 - 허가조건제6조(화재보험가입) 시장은 사용허가 받은 - 재산에 대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사용인에게 청구할수 있다고 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음	○사용허가서상의 오자를 정정하여 재계약하기 바람 ○화재보험의 가입에 관한 관련법규를 검토하여 처리하기 바람	○ 시유재산유상허가서 제작성교부 : 2005. 2. 11 (불입)하였고 금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 2004년도 화재보험료 부과 - 부과일 : 2005. 2. 11 - 금 액 : 32,750원 · 상천휴게소 : 15,440원 · 역수휴게소 : 17,310원 ○ 화재보험료 납부 완료 - 상천휴게소 : 2005. 2. 21 - 역수휴게소 : 2005. 2. 16	“완 결”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청풍문화재단지 관리	○시설물관리	○식수대는 청풍문화재단지와 어울리지 않으므로 향후 시설물 교체시 문화재 단지와 어울리도록 시설하기 바람	○ 문화재단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자재(자연석)를 사용 아래와 같이 사업완료토록 하였습니다 - 기 간 : 2005. 4. 30 - 사업량 : 3개소(신규1, 교체2) ▪ 신규 : 금병헌 ▪ 교체 : 사무실주차장, 석조여래입상 - 사업비 : 20,000천원(본예산확보)	“추진중”
		○보물546호 청풍석조여래입상 앞의 철구조물의 그네는 문화재주변의 경관과는 어울리지 않으므로 SBS 촬영장등으로 이전토록 하기 바람	- 기 간 : 2005. 5. 30 - 이전장소 : 몰태리109-37(전통문화체험장 공터) - 문제점 : 구조물해체.운반설치에 필요한 중장비 (크레인,굴삭기)전문기술등의 예산필요함 - 대책 ▪ 2005 제1회 추경시 예산확보(3,000천원) ▪ 예산미확보시 위험성을 고려 철거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청풍문화재단지 관리	○시설물관리	○보물528호 청풍한벽루앞에 느티나무를 제거하여 시계를 가리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람	○ 나무제거는 가능한 지양하고 대체 식재지를 조사 (공업단지, 도로변등의 조경용)이전을 원칙으로 추진 하되 대안이 없을시 2005. 4. 30 제거토록하여 시계 확보 및 문화재 보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중"
	○근무인원보강	○청풍관광개발사업소는 관리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은 인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근무인원을 보강할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 조치하기바람	○ 문화재단지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시설물과 야생화단지 관리인원이 부족함으로, ○ 따라서 휴양림 민간위탁시 잔여인원을 문화재단지 근무인원으로 충원요청 하겠으며, ○ 공공근로, 일시사역인원을 확보활용 토록하겠습니다	"추진중"

2004.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조치계획(결과)보고

【청풍관광개발사업소】

감사대상	건의사항	조치 요구 내용	조치 계획 (결과)	비고
○청풍문화재단지 관리	○야생화단지관리	○2003년 조성된 야생화단지는 개화시기가 긴수종으로 식재하여 오랜 기간동안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 기존에 조성된 야생화단지의 목적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연학습장에 산책로를 야생화길로 조성 볼거리 제공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 기간 : 2005. 4. 30 - 식재수종 : 5종(진달래, 철쭉, 연산홍, 조팝나무, 개나리) - 식재지 : 야생화단지 산책로, 절개지	“추진중”

시 유 재산 대 부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명	면적(m ²)	사용목적	비 고
청풍면 물태리	109-27	건 물	48.96	전통한식당	
같은곳	109-27	토 지	313	대 지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제천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기와집)전통한식당으로 한다

제 2 조 대부기간은 2004년 3월 12일부터 2007년 3월11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 3 조 대부료는 년 12,000,000원으로한다. 다만 ,일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 4 조 대부료의 납기는 “갑” 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을 해제하거나,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대부료의 연15%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건물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금 상당액을 대부받은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부과징수(추후통보)하며 이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필요한 수선 및 유지 관리비의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전항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와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상환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사용 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행위(영구시설물 축조등)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

제 8 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9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갑”이 대부 계약 해제를 요구할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할 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때
4.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때
5. “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더 이상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제 10 조 “을”이 본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대부료는 일할 계산하여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 11 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을” 은 “갑” 이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재산을 원상 복구하여 “갑”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을” 이 미 이행시 “갑” 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손해액을 “을” 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본 계약기간중 “을” 이 해약을 요구할때에는 1월전에 해약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을” 이 본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을” 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을” 은 본 계약체결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 하여야 하고 “갑” 이 “을” 에 대부한 후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5 조 “을” 은 본 계약조항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4 년 3 월 12 일

대 부 자 (갑)

제 천 시 장



대부를받는자(을)주 소 : 제천시 청풍면 물태리 109-27

성 명 : 김 미 영 (인)

주민등록번호 : 611003 - 2784028

시 유 재산 대 부 계 약 서

■ 재산의 표시

물건소재지	지 번	물건명	면적(m ²)	사용목적	비 고
청풍면 물태리	104-6	건 물	27.72	매 점	
같은곳	104-6	토 지	174	대 지	

위 재산에 대하여 대부자 제천시장을 “갑” 이라 하고 대부받은 자를 “을” 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대부재산의 사용목적은 매점 으로한다

제 2 조 대부기간은 2004년 6월 25일부터 2007년 6월24일까지(3년간)로 한다

제 3 조 대부료는 년 24,000,000한다. 다만 ,일할계산에 있어 1월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 4 조 대부료의 납기는 “갑” 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여야하며 지정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 재정법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대부 계약을 해제하거나,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29조에 의거 납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대부료의 연15%의 연체료를 가산 납부 하여야 한다

제 5 조 “을”은 대부재산에 대하여 “갑” 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재해복구건물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공제금 상당액을 대부받은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자에게 부과징수(추후통보)하며 이경우에는 당해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 6 조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대부재산의 보존책임과 필요한 수선 및 유지 관리비의 부담을 진다

② “을”은 전항 부담비용은 물론 민법 제203조와 6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 상환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제 7 조 “을”은 “갑”의 승인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대부사용 목적의 변경
2. 대부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대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행위(영구시설물 축조등)
4. 대부재산에 시설한 “을”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행위

제 8 조 “을”은 대부받은 재산에 대한 사용권 이외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 9 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은 언제든지 “을”에 대하여 대부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및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갑”이 대부계약 해제를 요구할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 조건에 위배할때
3. 허가받은 재산을 임의로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때
4.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할때
5. “을”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여 더 이상 대부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될때

제 10 조 “을”이 본 계약 조항을 불이행하거나 또는 위반하여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을”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 대부료는 일할 계산하여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 11 조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본 계약이 해약된 경우 “을” 은 “갑” 이지정하는 기한내에 대부채산을 원상 복구하여 “갑” 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을” 이 미 이행시 “갑” 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된 비용 및 손해액을 “을” 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 12 조 본 계약기간중 “을” 이 해약을 요구할때에는 1월전에 해약원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제 13 조 “을”이 본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여 “갑” 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을” 은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4 조 “을” 은 본 계약체결 이후에 본 재산에 부과된 일체의 공과금을 부담 하여야 하고 “갑” 이 “을” 에 대부한 후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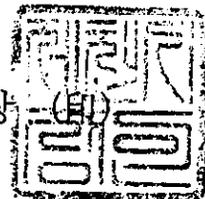
제 15 조 “을” 은 본 계약조항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계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등 관련 법규에 따른다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04 면 6 월 17 일

대 부 자 (갑)

제 천 시 장



대부를받는자(을)주 소 : 제천시 교동 138 - 109

성 명 : 윤 종 남



주민등록번호 : 420123 - 2396530

시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재산의 표시 : 충북 제천시 수산면 상천리 722-1번지
상천농산물판매장(건물 96.6㎡중 64.8㎡)

신 청 인 : 상천마을회

2002년 12월 31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다음의 조건을 부하여 그 사용을
허가함.

2002. 12. 31.

제 천 시

